

工業所有權 相談解説

本會 工業所有權相談案内

1. 相談日時：平日 09：00～17：00
公休日인 경우에는 翌日로 順延
2. 相談料：無 料
3. 相談依頼者：本會 會員企業(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)
4. 相談分野 및 範圍
 - 1) 工業所有權出願, 異議申請, 登録節次 및 要領
 - 2) 國內外 工業所有權紛爭의 豫防 및 事後處理
 - 3) 社內 特許管理・職務發明補償制度 運營方案
 - 4)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
- 5)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
- 6)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
5. 結果處理
 - 1)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 回答
 - 2)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하며 公開 可能한 相談은 事例集으로 譯어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
 - 3) 其他 必要한 關係資料 作成 配布
6. 問 議 處：調査部・振興部

(557-1077~8)

導入契約滿了된 노하우(Know-How) 實施

問

日本에서 特許된 商品의 製造方法을 特許權者와 技術導入契約을 締結하고 기술도입방법을 노하우(Know-How)로 하여 정부에 技術導入認可를 받아 현재 제조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직접 製造販賣하고 있는 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.

認可期間이 經過한 후에도 技術提供者의 同意없이 上記한 技術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계속 商品을 製造販賣하여도 違法은 아닌지요 아직까지 日本에서의 特許權者인 기술제공자는 國內에 特許權을 設定登錄한 사실이 없읍니다.

答

特許權의 設定登錄 및 權利行使는 屬地主義의 原則에 따르므로 日本에서 특허된 發明의 內容은 日本國 領域內에서만 效力이 있을뿐 그 外的 국가나 地域에서는 權利行使를 할 수 없읍은 물론 입니다.

그러므로 貴下의 問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 特許 登錄設定한 사실이 없는 上記의 發明에 대해서는 國內 에서 누구나 (물론 技術導入當事者인 貴下 自身도 포함 하여) 자유로이 實施할 수 있읍니다. 技術導入契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登錄設定되지 않은 外國의 特許 權은 전혀 무의미하므로 이를 노하우로 취급하여 技術 導入契約을 맺은 듯하며 아마도 이는 上記한 特許技術 (日本에서 특허되어 公報에 掲載된)의 도입외에 附隨 된 다른 技術의 導入까지를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읍니다.

그러므로 貴문에서와 같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技術 導入期間이 종료되면 技術提供先과의 기술제휴가 끝 나므로 이후 貴하가 어떤 技術을 사용하든 문제될 바 없읍니다.

왜냐하면 技術提供先이 제공한 技術이 國內에서 특

허된 技術이 아닌 한 누구나 實施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. 다행히도 貴하는 그 技術을 充分히 習得한 바 있 으므로 技術提供先의 도움이 없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技術導入契約期間滿了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 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 다.

한편 우리나라 기업이 일반적으로 많은 로열티(Royalty)를 支拂하고 外國으로부터 技術導入을 할때 契約 時 기술도입선으로부터 여러가지 制限條件을 提示받는 경우가 많지만 도입자가 特許에 대한 豫備의 知識을 갖 고서 臨한다면 이를 카바할 수 있다고 보니 다.

또한 도입기술이 特許이던 노하우이던간에 그 技術 의 習得에만 그치지 말고 그 技術을 充分히 消化改良 하여 새로운 우리 技術로 발전시켜 이를 出願하여 權利 化하는데 힘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보니 다.

外國에서의 實例를 더불어 말씀드리면 日本이 오늘 과 같은 技術立國으로 成長한 것은 歐美先進國으로부터 技術導入한 特許技術을 改良하여 自國은 물론 逆으로 歐美 各國에다 出願하면서 輸出을 하는 特許戰略의 結果라 하겠읍니 다.

辨理士 金 允 培